

#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5. 7. .
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- 「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안당 사용료 감면 혜택조항을 신설하고, 공설봉안시설의 운영 규정을 개정·정비하고 기존 조례안의 용어 및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마루공원의 사용료 등 개정(안 제6조의 1항 2항, 3항)
- 나. 봉안당의 사용 등 개정(안 제8조의 3항)
- 다. 마루공원의 운영방법 (안 제10조)
- 라. 마루공원의 운영지원 (안 제11조)
- 마. 마루공원 수탁자 또는 대행기관의 의무 (안 제12조 1항 2항, 3항)
- 바. 마루공원의 지도·감독 (안 제13조 1항 2항)
- 사. 마루공원 위탁의 취소 등 (안 제14조)

## 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덧붙임

## 5. 관계법령 발췌서: 덧붙임

## **6. 예산수반 사항: 해당없음**

## **7. 입법예고 결과**

가. 예고 기간: 2025. 6. 5.~2025. 7. 26.(21일간)

나. 의견 내용: 의견 없음

## **8. 부서협의 결과**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: 해당 없음

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: 개선사항 없음

다. 부패영향 분석평가: 원안동의

## **9. 참고사항 : 해당없음**

## **10. 관련부서 :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**

##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사용 신청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현금,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.

제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가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

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가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

- 1의4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

제8조제3항 중 “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제2항에 따라” 로, “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5년간 봉안당 무연 안치실에 안치한 후 산

골장에 뿌리는 등 임의처리할 수 있다”를 “무연고 유골로 보아 5년간 봉안당 무연 안치실에 안치한 후 산골처리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(운영위탁)”을 “(운영방법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비영리법인이나 지방공기업 및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”를 “비영리법인이나 지방공기업에 위탁하거나 대행시킬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”을 “제10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거나 대행시키는 경우에는”으로, “위탁받은 사람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”을 “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(이하 “수탁자 또는 대행기관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중 “수탁자”를 “수탁자 또는 대행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수탁자는”을 “수탁자 또는 대행기관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수탁자는”을 “수탁자 또는 대행기관은”으로 한다.

② 수탁자 또는 대행기관은 제11조에 따라 받은 지원금을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수탁자에 대하여”를 “수탁자 또는 대행기관에 대하여”로, “수탁자에게”를 “수탁자 또는 대행기관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수탁자에게 위탁업무”를 “수탁자 또는 대행기관에 업무”로 한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(위탁 또는 대행의 취소 등) 시장은 수탁자 또는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 또는 대행을

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제12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
2. 운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
3.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그 밖에 공익상 위탁 또는 대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노인장애인복지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 · 성명	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 선 미
	팀장 직위 · 성명	노인복지팀장 천 정 아
	담당자 성명 · 전화번호	김 지 애 (031-790-5511)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사용료 등) ① 사용 신청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현금, 신용카드 또는 수입증지를 이용하여 납부하여야 하며, 다만 수입증지 요금 계기 보유시 이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.</p> <p>②시장은 사용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 신고를 할 경우 영결식장, 빈소 및 안치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,</p> <p>2의2. ~ 3. (생 략)</p> <p>③시장은 사용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 신고를 할 경우</p>	<p>제6조(사용료 등) ① ----- ----- 따른 ----- 신용 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. &lt;후단 삭제&gt;</p> <p>②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----- -----제4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그 배우자가 사망 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,</p> <p>2의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----- ----- ----- -----</p>

봉안당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.
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. 다만,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부부단으로 안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. ,

1의2. · 1의3. (생략)

<신설>

2. (생략)

④ (생략)

제8조(봉안당의 사용 등) ① · ② (생략)

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재사용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최고하고, 그 기간이 경과

-----.
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가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

1의2. · 1의3. (현행과 같음)

1의4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

2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제8조(봉안당의 사용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---- 제2항에 따라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한 후에는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5년간 봉안당 무연 안치실에 안치한 후 산골장에 뿌리는 등 임의 처리할 수 있다.

④ ~ ⑥ (생략)

제10조(운영위탁) 마루공원 관리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지방공기업 및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1조(운영지원)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 등을 위탁받은 사람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수탁자의 의무) ①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②수탁자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.

③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시장

- 보아 -----  
----- 산골처리-----  
-----.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운영방법) -----  
-----  
-----  
비영리법인이나 지방공기업에 위탁하거나 대행시킬 -----  
-----.

제11조(운영지원) ----- 제10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거나 대행시키는 -----  
-----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(이하 “수탁자 또는 대행기관”이라 한다)-----  
-----.

제12조(수탁자 또는 대행기관의 의무) ①수탁자 또는 대행기관은 -----  
-----.

②수탁자 또는 대행기관은 제11조에 따라 받은 지원금을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---.

③수탁자 또는 대행기관은 -----

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3조(지도·감독)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, 업무의 이행을 지도·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, 서류,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14조(위탁의 취소 등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
2. 수탁자가 수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
3.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

-----  
-.

제13조(지도·감독) ①-----  
----- 수탁자 또는 대행기관에  
대하여 -----  
-----  
--- 수탁자 또는 대행기관에 --  
-----.

②---- 수탁자 또는 대행기관에  
업무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14조(위탁 또는 대행의 취소 등)  
----- 수탁자  
또는 대행기관이 다음 -----  
----- 위탁 또는 대행-----  
-----.

1. 제12조에 따른 -----  
-----
2. 운영 -----  
-----
3. 운영능력-----  
-----
4. ----- 위탁 또는 대

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행-----

## 관계법령 발췌서

### ■ 장사 등에 관한 법률

제13조(공설묘지 등의 설치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공설묘지·공설 화장시설·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·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·공설 화장시설·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·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·공설 화장시설·공설봉안시설·공설자연장지 및 제3항에 따른 수목장립 등 자연장지를 설치·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·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하여야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⑥ 제5항에 규정된 장사시설을 설치·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묘지·분묘, 화장, 봉안 또는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·절차 등에 따라 기록·보관하여야 한다.

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설묘지·공설 화장시설·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과 수목장립 등 자연장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

2. “위탁”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
3. “민간위탁”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
### ■ 지방공기업법

제71조 (대행사업의 비용 부담)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

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

제75조의 4 (권한의 위탁)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은 공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